



#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개인 방역 수칙

2021. 5.



교육부



# 목차

1. 기본 방역 수칙.....	1
2. 등교 수업 시 .....	4
3. 일상 생활 시 .....	5
4. 시간제 취업 시.....	7
참고 .....	11

동 자료는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‘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’을 바탕으로 다국어로 번역·제작되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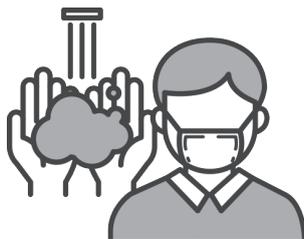
# 1. 기본 방역 수칙



▶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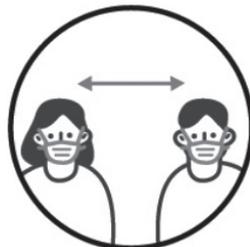
-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,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
## 중요 수칙 메시지



### [제1수칙]

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



### [제2수칙]

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



### [제3수칙]

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



### [제4수칙]

밀폐 시설·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



### [제5수칙]

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



▶ 체류 자격, 국적에 관계없이 아래의 검사 대상자는 무료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국내감염\*의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도 무료\*\*이므로,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

\* 해외 유입(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)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전액 지원, 일부 지원, 미지원으로 구분

\*\* 방역수칙 위반,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##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

<p><b>의사환자</b></p>	<p>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</p>
<p><b>조사대상 유증상자</b></p>	<p>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

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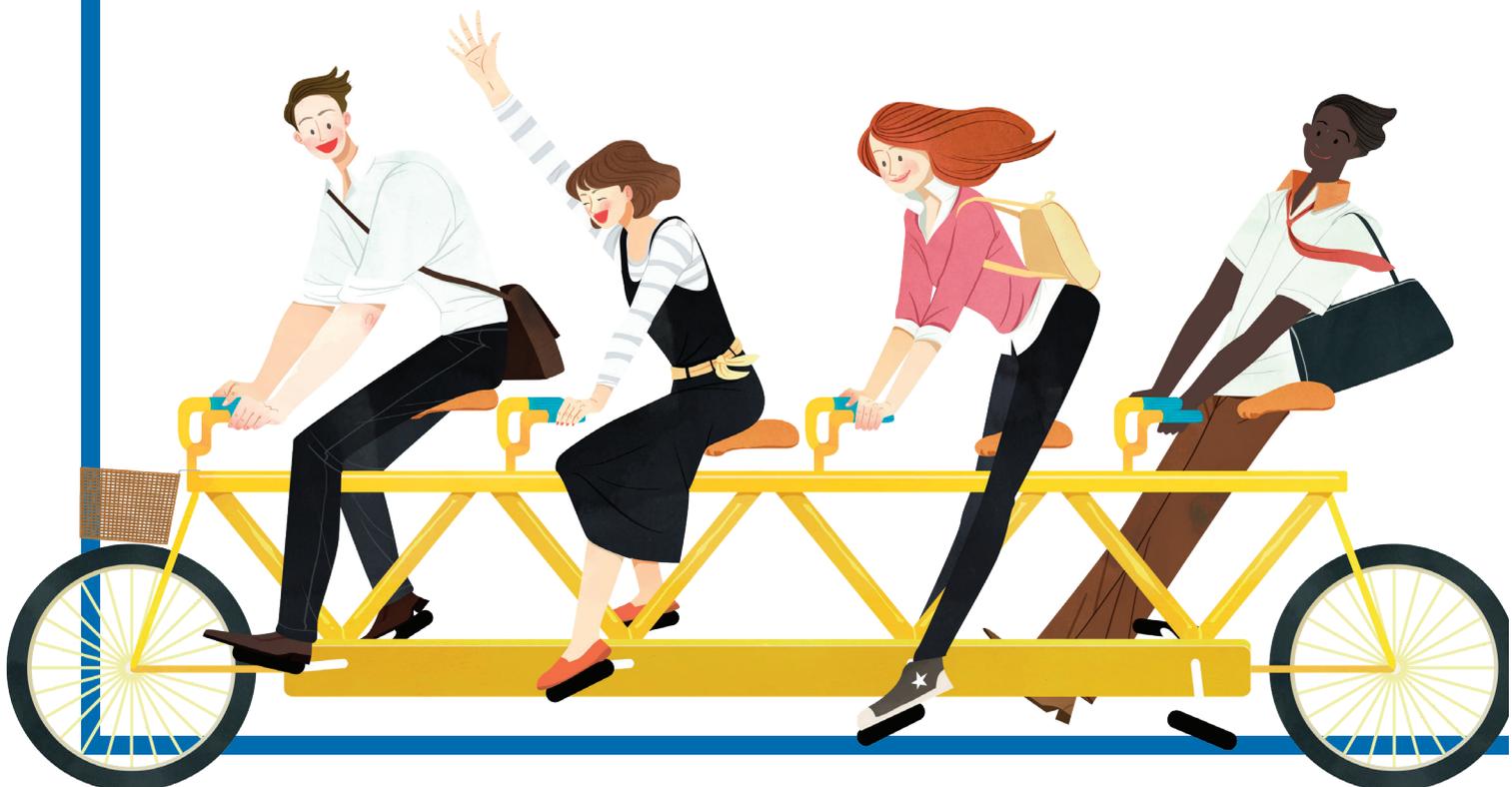
# 1. 기본 방역 수칙



※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, 역학적 연관성, 증상 유무,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(별도공지 시 까지, 외국인도 가능). 무료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위치는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 +120)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

##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(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)

- ①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-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-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



## 2. 등교 수업 시



- ▶ **(등교 전)**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, 지도교수,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 등에 연락
  -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
    - ※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,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
  -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
  -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알린 후 등교
    - ※ 38°C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

### 다음의 경우 등교 중지

-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
-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
  - ※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‘즉시’ 별도 시설에서 격리를 함에 따라 본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경우 등교 가능
- ③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

- ▶ **(등교 시)**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강의실에서도 띄어앉기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행
  -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(유학생회, 동아리 등)은 최대한 자제하고,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
- ▶ **(등교 후)**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지도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
  -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하고,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지도교수 또는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

### 3. 일상 생활 시

#### 기숙사 생활 시



-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,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  -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,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,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금지
  - 2인 이상이 1개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 방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고,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
  - 방 밖을 벗어난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, 공용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)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    -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, 대화,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
    -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,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에서 실시
  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  -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
- ※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,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

## 학교 밖에서 공동 생활 시



-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-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, 대화 자제
  -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
- 함께 음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, 따로 식사하기, 음식 덜어먹기, 식사 중 대화 자제 등을 통해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 최소화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


## 동아리,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

- 온라인 등 비대면·비접촉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
- 입과 코를 가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, 출입 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(전자 또는 수기) 기록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
-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-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(성가대, 합창단 등),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하지 않기
- 식당 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는 엄격히 제한하고, 공용물품(수건, 컵 등) 사용 제한 및 개인물품 사용
- 접촉·대면 모임 및 행사(수련회, 캠프, 종교 소모임 등)는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

## 4. 시간제 취업 시

###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



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
  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하여 허용하며,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, E1~E7 전문분야 및 E-9, E-10 분야는 허가 제한
    - ※ 전문분야(E1~E7)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며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 TOPIK 4급(KIIP 4단계 이수)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
- 표준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대학 담당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

### 허가절차



#### 고용계약서 작성

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 
(표준근로계약서, 시급 기재)



####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

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



#### 신청

첨부서류,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


#### 허가, 불허

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

- **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,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**
  - (학위과정 유학생, D-2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 이상이며, TOPIK 3~4급(KIIP 3~4단계 이수)\*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  - \* 시간제 취업 허가를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
      - 전문학사 및 학사 1~2학년 : TOPIK 3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소지
      - 학사 3~4학년 및 석·박사 : TOPIK 4급(KIIP 4단계 이수) 이상 소지
      - 영어트랙과정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 상당의 어학능력 소지
  - (어학연수과정, D-4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이며, TOPIK 2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  
- **과정별로 주당 허용된 시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 가능**
  - ※ 한국어,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 내에서만 허용
    -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  -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이며,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시간제 취업 가능
    -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  -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(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    - (석·박사과정) 주당 25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30시간 이내)
  
- **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강제퇴거,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등 조치 가능**
  - ※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 명령

## 4. 시간제 취업 시

### 시간제 취업 시 방역 수칙

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,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 
- 귀가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며, 의심증상 지속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, 검사 사실에 대해 지도 교수나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, 국제처 직원에게 연락  
※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방문,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
-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,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및 주기적인 손 씻기·손 소독 등 시행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소리로 대화, 불필요한 대화, 통화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
- 공용 물품이 아닌 개인 찻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, 개인별 작업복 등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 금지
-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(전화, 헤드셋, 마이크 등)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실시
-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, 덜어먹기를 위해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
-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으며, 실내 흡연실 이용은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
- 소규모 모임, 동아리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즉시 귀가

## 참고 : 선별진료소 위치 문의, 통역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

- ▶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,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, 관광안내센터(1330),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(1577-0071)로 문의

전화번호	운영시간	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	24시간	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와 연계
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
	09:00~18:00	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
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, 일본어
	09:00~18:00	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
1577-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	09:00~18:00	베트남어, 필리핀어(영어), 태국어(라오스어), 몽골어, 인도네시아어(동티모르어), 스리랑카어, 중국어, 우즈베키스탄어, 키르기즈스탄어, 파키스탄어, 캄보디아어, 네팔어, 미얀마어, 방글라데시어



#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## 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1  손바닥	2  손등	3  손가락 사이
4  두 손 모아	5  엄지손가락	6  손톱 밑

**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 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##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

## [올바른 기침예절]

1 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	2  옷 소매로 가리기	3 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발행일 2019.11.5

코로나19, 인플루엔자  
동시 유행 시

#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# 일반수칙

- 실내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 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 
※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, 고령자, 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, 소독하기

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#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받기



##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



###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

※ 자가 격리 대상자는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\*』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\* 제 80조(벌칙)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###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
-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
- 식사는 혼자서 하기
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(공용으로 사용 시,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)



###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 먼저 연락하기



###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
- 불가피할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


###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

-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-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

### 건강수칙 지키기

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
-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, 기침 후 손씻기, 손소독하기

자가치료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 
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,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증상 모니터링 방법
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
-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, 체온, 증상 알려주기

###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발열(37.5°C 이상)
- 권태감
- 인후통
-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
- 폐렴



##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



###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

※ 자가 격리 대상자는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\*』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.  
\* 제 80조(벌칙)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###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
-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
- 식사는 혼자서 하기
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(공용으로 사용 시,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)



###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 먼저 연락하기



###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
- 불가피할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


###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

-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-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

### 건강수칙 지키기

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
-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, 기침 후 손씻기, 손소독하기

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 
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자가 모니터링 방법

- ☑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☑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
- ☑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, 감염 증상 알려주기

###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☑ 발열(37.5°C 이상)
- ☑ 권태감
- ☑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- ☑ 폐렴

